

비과세 · 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2012.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태 훈 공인회계사

이 형 민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저축상품 비과세 · 감면 현황	9
1. 개관	9
가. 우리나라의 저축 추이	9
나. 소득분포에 따른 저축 현황	11
다. 조세지원 대상 저축상품	13
2.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현황	13
가. 개요	13
나. 대표적인 저축상품 비과세 · 감면제도	14
3.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	27
III. 주요국의 저축상품 비과세 · 감면 사례	30
1. 미국	30
가. 개요	30
나. 대표적인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32
2. 일본	45
가. 개요	45
나. 대표적인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46
3. 영국	55
가. 개요	55
나. 대표적인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57
4. 프랑스	63
가. 개요	63

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65
IV. 국제비교	75
1. 조세특례 운용 비교	75
가. 한국	75
나. 미국	75
다. 일본	76
라. 영국	76
마. 프랑스	77
2. 조세특례 목적 비교	78
가. 한국	78
나. 미국	79
다. 일본	79
라. 영국	80
마. 프랑스	80
3. 조세특례 방법 비교	82
가. 한국	82
나. 미국	82
다. 일본	83
라. 영국	83
마. 프랑스	83
V. 요약 및 시사점	85
1. 저축상품별 조세지원제도 운영	85
2. 조세지원규모	86
3. 조세지출과 소득분포	87
4. 조세지원 대상과 목적의 다양성	89
참고문헌	91

표 목차

〈표 I -1〉 총저축률과 개인부문의 순저축률 평균 추이	7
〈표 II -1〉 예금별 수신금액	10
〈표 II -2〉 주요국의 가구당 순저축률	11
〈표 II -3〉 소득 5분위별 저축 현황	12
〈표 II -4〉 저축상품별 요건과 조세지출액	29
〈표 III -1〉 미국의 총조세지출 대비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의 규모	31
〈표 III -2〉 총금융소득 대비 비과세 · 감면 저축소득 비율(2009년)	32
〈표 III -3〉 「Traditional IRA」 계좌의 기여금에 대한 공제 한도	34
〈표 III -4〉 「Roth IRA」 계좌에 대한 기여금 한도	36
〈표 III -5〉 IRA 유형별 세제혜택	39
〈표 III -6〉 미국의 대표적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44
〈표 III -7〉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조세지출 규모	46
〈표 III -8〉 일본의 대표적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54
〈표 III -9〉 ISA 추세	56
〈표 III -10〉 2009~2010년 소득분포별 ISA 계좌수	56
〈표 III -11〉 주요 저축상품의 조세지출	57
〈표 III -12〉 영국의 대표적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62
〈표 III -13〉 주요 저축상품 추세	64
〈표 III -14〉 프랑스의 주요 저축상품 조세지출	65
〈표 III -15〉 프랑스의 대표적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74
〈표 IV -1〉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 관련 조세특례제도 비교	78

〈표 IV-2〉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의 조세특례 목적 비교.....	81
〈표 IV-3〉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의 조세특례 방법 비교.....	84
〈표 V-1〉 주요국별 저축상품의 조세지출액.....	87
〈표 V-2〉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	88

I. 서론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옴
 - 평균 개인순저축률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에 10.2%이었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1.4%에 달함

-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최근 금융과 재정의 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순저축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중산층 이하 단계에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가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어렵게 함

〈표 I -1〉 총저축률과 개인부문의 순저축률 평균 추이

(단위: %)

구분	'75~'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총저축률	27.5	28.2	37.8	36.9	34.7	31.9	30.9
개인 순저축률	10.2	11.8	22.4	21.4	15.5	5.0	3.6

주: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이며, 재화와 서비스 구입(최종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순처분 가능소득 대비 비율임
자료: 김동열 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이와 원인분석』, p. 31,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은 다양한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 주택의 취득, 노후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축지원 조세제도를 운영함

-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후보장과 소득향상을 위

한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각종 명목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임

□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저축은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볼 때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저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상이 되는 저축상품으로 한정함
- 다만 별도의 조세지원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퇴직연금은 본 보고서의 저축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Ⅱ장에서는 조세혜택이 있는 우리나라의 저축상품을 소개하였음
- 제Ⅲ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세지원 저축상품을 소개하였음
- 제Ⅳ장에서는 이들 저축상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였음
- 제Ⅴ장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였음

Ⅱ. 우리나라의 저축상품 비과세·감면 현황

1. 개관

가. 우리나라의 저축 추이

- 총예금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현재 약 909조원에 달함
 - 2011년 기준으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각각 85조원과 824조원에 달함

- 저축성예금이 총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축성예금이 총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88%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91%에 달함
 - 저축성예금 중에서는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저축성예금 중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은 정기예금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기예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2007년에는 저축성예금의 57%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는 66%까지 증가함
 - 저축예금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업자유예금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장기주택마련저축,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표 II -1〉 예금별 수신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2007 ¹⁾	2008 ¹⁾	2009 ¹⁾	2010 ¹⁾	2011 ¹⁾	
요구불예금	66,361	66,483	75,140	80,752	84,582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291,632	341,963	377,844	475,666	541,351
	정기적금	14,593	14,067	18,765	20,739	22,814
	상호부금	10,043	8,701	9,153	9,570	9,073
	주택부금	4,986	3,748	2,901	2,319	1,760
	저축예금	94,369	89,716	103,682	118,277	127,837
	목돈마련저축	1	1	-	-	-
	기업자유예금	76,737	85,374	102,691	106,054	111,346
	근로자장기저축	4	3	3	3	2
	장기주택마련저축	14,694	15,062	15,001	13,771	9,827
	근로자우대저축	2,777	68	16	9	5
	가계장기저축	9	6	4	3	2
	소계	509,845	558,708	630,060	746,409	824,018
합계	576,206	625,191	705,200	827,161	908,600	

주: 1) 총수신금액은 평잔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10년에 4.3%임
- 우리나라의 가구당 저축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
- 2010년 현재 일본은 2.3%로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미국은 5.5%로 우리나라보다 높음
 - 영국은 -2.8%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고 프랑스는 11.6%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음

〈표 II-2〉 주요국의 가구당 순저축률¹⁾

(단위: %)

구분	1999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10.0	7.6	8.8	9.2	9.7	10.4	11.7	11.5	10.7	8.3
프랑스	11.3	11.7	11.9	12.2	11.1	11.2	11.7	11.7	12.6	12.1
독일	9.6	9.5	10.4	10.6	10.7	10.8	11.0	11.7	11.1	11.3
이탈리아	10.0	10.0	10.3	10.5	10.2	9.5	8.9	8.5	6.9	5.1
일본	10.2	3.8	2.7	2.3	1.6	1.3	1.1	0.5	2.3	2.3
한국	16.1	5.2	5.2	9.2	7.2	5.2	2.9	2.9	4.6	4.3
스페인	5.9	6.7	5.2	4.8	3.9	4.0	7.5	13.0	7.7
영국	0.9	1.6	0.3	-1.7	-1.5	-2.5	-3.1	-1.8	3.1	2.7
미국	3.2	2.8	3.8	3.5	1.7	2.7	2.4	5.5	5.3	5.5
Euro area	9.2	8.9	9.2	9.2	8.6	8.2	8.6	8.7	9.7	8.2
EU27	7.2	7.3	6.9	6.3	6.0	5.6	5.5	5.9	8.1	6.7

주: 1) 순저축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임
 자료: OECD Factbook 2013 <http://www.oecd-ilibrary.org/sites/factbook-2013-en/>

나. 소득분포에 따른 저축 현황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평균 저축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2년의 경우 소득 5분위의 저축금액은 총자산에서 20.3%를 차지하였으나 소득 1분위의 저축금액은 총자산에서 11.0%를 차지함

- 총자산에서 저축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축의 종류별로 보면 적립식저축이 예치식저축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예치식저축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립식저축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음

- 적립식저축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2분위 가구부터 예치식저축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음

〈표 II-3〉 소득 5분위별 저축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평균금액	자산 대비 비중	평균금액	자산 대비 비중	평균금액	자산 대비 비중	
소득 1분위	적립식저축	400	3.6	530	4.9	500	5.1
	예치식저축	613	5.5	561	5.2	515	5.2
	기타저축	73	0.7	113	1.0	72	0.7
	소계	1,085	9.7	1,204	11.1	1,087	11.0
소득 2분위	적립식저축	975	6.5	1,069	6.6	1,144	6.9
	예치식저축	646	4.3	827	5.1	876	5.3
	기타저축	155	1.0	250	1.6	175	1.1
	소계	1,776	11.8	2,147	13.3	2,195	13.2
소득 3분위	적립식저축	1,727	8.7	2,116	9.3	2,131	9.2
	예치식저축	914	4.6	1,263	5.5	1,248	5.4
	기타저축	233	1.2	374	1.6	438	1.9
	소계	2,874	14.5	3,753	16.5	3,818	16.5
소득 4분위	적립식저축	2,787	9.6	3,225	9.6	3,429	10.1
	예치식저축	1,397	4.8	1,689	5.0	2,107	6.2
	기타저축	324	1.1	594	1.8	584	1.7
	소계	4,508	15.5	5,508	16.3	6,120	18.1
소득 5분위	적립식저축	5,838	9.2	6,630	10.2	7,263	9.8
	예치식저축	3,734	5.9	4,716	7.2	6,375	8.6
	기타저축	899	1.4	1,153	1.8	1,344	1.8
	소계	10,471	16.6	12,499	19.1	14,982	20.3
전체	적립식저축	2,346	8.5	2,715	9.1	2,894	9.2
	예치식저축	1,461	5.3	1,812	6.1	2,224	7.1
	기타저축	337	1.2	497	1.7	523	1.7
	소계	4,143	15.0	5,023	16.9	5,641	17.9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다. 조세지원 대상 저축상품

- 우리나라는 주택 취득, 주식 취득, 노후 대비, 교육비 확보, 생계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저축상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즉, 가입자의 특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가입자요건이 없는 저축상품으로는 세금우대종합통장,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등이 있음

- 조세지원의 방법은 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임
 - <표 Ⅱ-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2012년 조세지출액은 1조 8,031억원에 달함
 - <표 Ⅱ-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2012년 조세지출액은 2,638억원에 달함
 -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그 밖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저율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함

2.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현황

가. 개요

- 한국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저축상품에 제공되고 있음
 - 주요 저축상품으로는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임
 - 저축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제한은 대체적으로 없으나, 청약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은 특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함

- 한국은 주택의 취득, 주식의 취득, 친환경산업 육성, 중산층 이하의 저축지원, 자본시장 안정화와 같은 목적에 따라 저축상품에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조세지원방식에는 납입단계에서 저축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운용단계에서 운용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제도가 있음
 - 납입단계에서 조세지원이 있는 저축상품에는 장기주식형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음
 - 운용단계에서 조세지원이 있는 저축상품에는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등이 있음
 - 장기주식형저축은 납입단계와 운용단계 모두에서 조세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나. 대표적인 저축상품 비과세·감면제도

1) 재형저축

-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재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함¹⁾
 - 2012년 12월 31일에 도입됨
- 재형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가입자요건(근로자, 저소득), ② 표시요건, ③ 계약기간요건, ④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가입자요건(근로자, 저소득)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충족됨
 - i)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ii) i)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② 표시요건: 금융회사 등²⁾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 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함
- ③ 계약기간요건: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함
- ④ 납입금액요건: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함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다만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2)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요건을 충족한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함³⁾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가입자요건(무주택, 연령), ② 표시요건, ③ 계약기간요건, ④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가입자요건(무주택, 연령)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⁴⁾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⁵⁾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4)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5)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② 표시요건: 금융회사 등⁶⁾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 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함
 - ③ 계약기간요건: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④ 납입금액요건: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3) 주택청약저축

-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⁷⁾
- 청약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가입자요건(근로자, 무주택), ② 표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가입자요건(근로자, 무주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② 표시요건: i)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ii)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대상이 됨
 - 청약저축 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해양보장관이 지정하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서만 취급
- 소득공제액은 납입금액의 40%이나 연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없는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것으로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청약저축 소득공제액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⁸⁾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⁹⁾과 합산한 한도규정을 적용받음
 - 이들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①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②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6%를 곱한 추징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⁰⁾
 - 비과세 대상 소득은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나 저축의 해지로 인해 받는 이자소득이나 저축장려금임
 - 저축의 해지 사유: 농어민의 사망·해외이주 및 천재지변
 -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됨

8)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9)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1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가입자요건(농어민), ② 표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가입자요건: 가입자는 농어민이어야 함

② 표시요건: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만 취급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임

5)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¹¹⁾

□ 생계형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가입자요건(연령), ② 표시요건, ③ 납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가입자 요건(연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표시요건: 금융기관¹²⁾이나 특정한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여야 함

- 특정한 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 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을 포함

③ 납입금액 요건: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6) 우리사주조합기금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¹³⁾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로 한정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4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¹⁴⁾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다만 그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①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주식이거나 ②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과세인출주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서 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②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주식이거나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으로 취

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2항

1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득한 주식, ③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를 제외함

7)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계의 저축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함¹⁵⁾
 - 저율분리과세 세율: 9%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표시요건(발행기관), ② 신청요건, ③ 계약기간요건, ④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표시요건(발행기관): 금융회사 등¹⁶⁾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
 - ② 계약기간요건: 1년 이상
 - ③ 납입금액요건: 2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명당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다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경우 1명당 3천만원
-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과 원천징수의 일반규정인「소득세법」제129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 다만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8) 장기주식형저축

-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저축금에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함¹⁷⁾
 -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5%
 -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200만원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200만원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200만원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¹⁸⁾
 -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
- 장기주식형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운용요건, ② 계약기간요건, ③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운용요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것이어야 함
 - ② 계약기간요건: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 이자 ·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

1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3항

- ③ 납입금액요건: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여야 함
 -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음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해지추징세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과 납입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¹⁹⁾

9) 장기회사채형저축

-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함²⁰⁾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해당하는 저축은 ① 운용요건, ② 계약기간요건, ③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운용요건: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의 주식이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것이어야 함
 - ② 계약기간 요건: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 ③ 납입금액 요건: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5,0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여야 함

19)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액에 5%를 곱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액에 2.4%를 곱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납입액에 1.2%를 곱한 금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제1항

-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 · 이자 · 배당 ·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다만,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0) 녹색저축

-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함²¹⁾
- 녹색저축에 해당하는 예금은 ① 운용요건, ② 계약기간요건, ③ 납입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운용요건: 은행이나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40% 이상을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하여야 함
 - ② 계약기간요건: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 ③ 납입금액요건: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 이내로 할 것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함

2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제2항

- 녹색저축 이외에 녹색투자신탁 등 녹색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도 있음

11)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함²²⁾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이며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이고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12) 조합등예탁금

- 조합등예탁금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6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로 저율 분리과세 함
- 또한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함

2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조합등예탁금은 ① 가입자요건(농어민), ② 표시요건(발행기관), ③ 납입금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가입자요건(농어민): 농민 · 어민 및 그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하여야 함
 - ② 표시요건(발행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조조합원 · 준조합원 · 계원 · 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의 예탁금이어야 함
 - ③ 납입금액요건: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이어야 함

13) 연금저축

-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됨²³⁾
 - 다만, 공제한도액은 연금계좌 납입금과 공적연금의 기여금 · 개인부담금을 합하여 400만원까지임
 -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는 ①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와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경우를 제외함

-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으로 이관됨
 - 하지만 부칙(2013.1.1. 법률제11614호) 제40조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또한 부칙(2013.1.1. 법률제11614호) 제41조에 따르면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개정된 「소

23)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

특세법」 제51조의3의 연금계좌로 봄

14) 조합등출자금

- 조합원·회원 등이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그 금융기관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함²⁴⁾
 - 농협 등 금융기관이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를 말함
 - 출자금은 1명당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배당소득의 비과세 일몰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임

1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별로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저율분리과세 함²⁵⁾
 -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임
 - 저율분리과세의 일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임

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2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3.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

- 우리나라의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액은 2010년에 2.15조원, 2011년에 2.35조원, 2012년에 2.51조원으로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임
 - 조세지출액에서 저축상품 관련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7.16%, 2011년에 7.67%, 2012년에 7.85%로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저축상품 조세지출액 중에서 이자소득 비과세의 비중은 2012년에 71.78%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저율분리과세가 10.93%, 배당소득 비과세가 10.50%, 주택청약저축 등의 소득공제 순서로 높았음

- 가입자의 저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은 2013년부터 도입되는 재형저축이 유일함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은 주로 저소득층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 가입자의 재산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은 장기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임
 - 장기마련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마련을 전제로 하는 저축상품임

- 가입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저축상품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과 조합등예탁금임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은 저소득이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이 목적인 반면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단됨

- 그 밖에 농어민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음

- 무주택, 저소득, 연령, 우리사주조합원, 농어민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취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으로 판단됨
 -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을 요건으로 하는 저축상품은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임

-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통장 등은 별도의 가입자요건이 없음
 - 가입자요건이 없으므로 가입자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무관하게 조세지원이 적용됨

〈표 II -4〉 저축상품별 요건과 조세지출액

(단위: 억원)

구분	요건										조세지출액		
	가입자					저축금 운용		표시 (발행기관)	장기 계약	납입한도 (공제한도)	2010	2011	2012
	근로자	무주택	저소득	연령	농어민	연령	농어민						
장기저축보험 보편차익	X	X	X	X	X	X	X	O	O	X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소득)	X	O	X	O	X	X	O	O	O	O			
농어기부돈마련저축	X	X	X	X	O	X	O	O	X	X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이자소득)	X	X	X	O	X	X	O	O	X	O	12,998	17,041	18,031
조합등예탁금	X	X	X	O	O	X	X	X	X	O			
장기주식형저축(이자소득)	X	X	X	X	X	X	O	X	O	O			
장기회사채형저축(이자소득)	X	X	X	X	X	X	O	X	O	O			
녹색저축(이자소득)	X	X	X	X	X	X	O	X	O	O			
장기주택마련저축(배당소득)	X	O	X	O	X	X	X	O	O	O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배당소득)	X	X	X	O	X	X	X	X	X	O			
우리사주조합기금(배당소득)	O	X	X	X	X	X	O	O	X	X			
조합 등 출자금(배당소득)	X	X	X	X	O ²⁾	X	O	O	X	O	2,592	2,472	2,638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주식의 배당소득	X	X	X	X	X	X	O	X	X	O			
장기주식형저축(배당소득)	X	X	X	X	X	X	O	X	O	O			
장기회사채형저축(배당소득)	X	X	X	X	X	X	O	X	O	O			
녹색저축(배당소득)	X	X	X	X	X	X	O	X	O	O			
세금우대종합통장(저울과세)	X	X	X	X	X	X	X	O	O	O	3,270	1,871	2,746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O	O	X	X	X	X	X	O	X	O	2,036	1,566	1,206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X	X	X	X	X	X	O	X	O	O	182	185	189
연금저축(소득공제)	X	X	X	X	X	X	X	O	O	O	401	354	310
채형저축	O ¹⁾	X	O	X	X	X	X	O	O	O	n/a	n/a	n/a
총조세지출액											299,997	306,194	319,871
저축상품 비중											7.16%	7.67%	7.85%

주: 1) 사업자 포함

2)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음

자료: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

Ⅲ. 주요국의 저축상품 비과세·감면 사례

1. 미국

가. 개요

- 미국에서는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내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이나 근로자은퇴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등에서 조항별로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으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상품이나 저축채권 등이 있음
-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으로는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가 있으며, 세전 급여를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세후 급여를 불입하는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혜택이 있음
 - IRA는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이 있음
-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제도가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 및 의료비 지출용 인출 시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음

- 교육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한 비과세 저축기금으로 등록금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rograms, QTP) 및 Coverdell 교육저축기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Coverdell ESA)이 있으며, 일정한 연방정부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의 상황에 대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음
 - QTP는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서, Coverdell ESA는 금융기관에서 비과세로 운영하는 저축기금으로서 기금 불입시 및 교육비 사용목적의 인출시 수혜자(수증자)에게 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않음
 - 고등교육비용에 지출하기 위해 보유한 연방정부 저축채권을 정부로부터 현금 상환 받는 경우 관련 이자는 비과세됨

- 이러한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혜택이 총조세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2009년 및 2010년 기준으로 3%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Ⅲ-1〉 미국의 총조세지출 대비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의 규모

(단위: 십억달러, %)

항목	2009년		2010년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Traditional IRA	28	2.92	21.5	1.94
Roth IRA	0.1	0.01	3.6	0.32
SIMPLE IRA, SEP IRA	0.9	0.09	0.9	0.08
HSA	0.7	0.07	0.9	0.08
QTP	0.4	0.04	0.5	0.05
Coverdell ESA	0.1	0.01	0.1	0.01
US Savings Bond	1.2	1.3	1.2	0.11
비과세·감면 저축 소계	29.9	3.11	28.7	2.55
총조세지출액	960	100	1,108	100

자료: http://subsidyscope.org/tax_expenditures/db/?estimate=3&year=2008

- 한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추정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6.17% 수준임²⁶⁾

〈표 Ⅲ-2〉 총금융소득 대비 비과세·감면 저축소득 비율(2009년)

(단위: 십억달러)

항목	금액
이자소득 조세수입(Taxable Interest)(A)	168
배당소득 조세수입(Ordinary Dividends & Qualified Dividends)(B)	287
과세된 금융소득 소계(C=A+B)	455
비과세·감면 저축 조세지출액(D)	29.9
추정 금융소득 총계(E=C+D)	484.9
총금융소득 대비 비과세·감면 저축소득의 비율(E/D)	6.17%

자료: <http://www.irs.gov/uac/SOI-Tax-Stats-Historical-Table-1>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3642>

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1)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

- 개인퇴직계좌(IRA)는 1974년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본인의 계좌에 저축(retirement savings)을 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됨
 - IRA는 「근로자은퇴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의 시행과 함께 도입됨
 -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이상의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이란 노인, 유족, 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에 의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기업연금²⁷⁾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한 종류로 운영되며,

26) 동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9년 세입보고서(개인소득세 부분)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총금융상품 예치액 잔고 대비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예치액 잔고 수준을 추정하기 위함임

가입에 있어 형식적인 강제성이 없음

- IRA는 원래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기업 연금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이후 가입범위가 점차 확대됨
 - 1981년에는 「경제회복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 ERTA)」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70.5세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가 확대되었음
 - 현재 IRA는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이직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는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추가 연금저축으로 많이 활용됨

- IRA는 Traditional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조세혜택이나 불입액 한도 등이 상이함
 - Traditional IRA는 1974년에 도입되었으며,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혜택이 있음
 - Roth IRA는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운용수익 비과세 혜택이 있음
 - SIMPLE IRA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용자 지원이 별도로 있고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혜택, 사용자 기여금의 손금산입 혜택이 있음
 - SEP IRA는 1978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용자 지원이 별도로 있고 운용수익 과세이연 혜택 및 사용자 기여금의 손금산입 혜택이 있음

- 대부분의 IRA 유형은 본인의 계좌에 적립하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세제혜택이 있음
 - 다만 Roth IRA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일정요건 충족시 인출액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또한 사용자 지원 IRA(SIMPLE IRA, SEP IRA)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하는 기여금에

27) 401(k) plan이 대표적이며, 401(k) plan에서는 기업이 지원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현재 급여소득 중 일부를 불입하도록 하고 있음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함

가) Traditional IRA

□ 기여금은 연간 5천달러(50세 이상인 경우는 6천달러)와 개인이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과세대상 보수(taxable compensation)²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음

〈표 III-3〉 「Traditional IRA」 계좌의 기여금에 대한 공제 한도

구분	소득신고 형태	조정총소득 요건	공제 수준
개인이 퇴직연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독신, 세대주 또는 적격 미망인(홀아비) 신고	소득 제한 없음	기여금 한도 ¹⁾ 까지 전부공제
	직장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이 아닌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 또는 개별신고하는 경우	소득 제한 없음	기여금 한도까지 전부공제
	직장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인 배우자와 합산신고하는 경우	\$169,000 이하	기여금 한도까지 전부공제
		\$169,000~\$179,000	부분공제
		\$179,000 초과	공제하지 않음
	직장에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인 배우자와 개별신고하는 경우	\$10,000 이하	부분공제
\$10,000 초과		공제하지 않음	
개인이 퇴직연금 적용대상인 경우	독신, 세대주 신고	\$56,000 이하	기여금 한도까지 전부공제
		\$56,000~\$66,000	부분공제
		\$66,000 이하	공제하지 않음
	부부합산신고 또는 적격 미망인(홀아비) 신고	\$90,000 이하	기여금 한도까지 전부공제
		\$90,000~\$110,000	부분공제
		\$110,000 이하	공제하지 않음
	부부개별신고	\$10,000 이하	부분공제
		\$10,000 초과	공제하지 않음

주: 1) IRA 계좌의 기여금 한도(contribution limit)는 \$5,000(50세 이상은 \$6,000)임
 자료: <http://www.irs.gov/retirement/participant/article/>, “2011 IRA Deduction Limits - Effect of Modified AGI on Deduction if You Are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 “2011 IRA Deduction Limits - Effect of Modified AGI on Deduction if You Are NOT Covered by a retirement Plan at Work,” 2011.10.4.

28) 보수(compensation)에 임금(wage), 급여(salary), 수수료(commission),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 이혼수당 및 위자료(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등은 포함되나, 자산수익,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연체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Traditional IRA 계좌에 개인이 불입하는 기여금(contribution)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기여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개인의 소득, 신고형태(filing status), 퇴직연금 가입 여부(retirement plan at work) 등에 영향을 받음

- 그러나 Traditional IRA로부터의 연금 인출액에 대해서는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함
 - 만일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는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하여 10%의 추가소득세를 과세하나, 다음과 같은 비과세 인출액(tax-free withdrawals)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새로운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이관(direct rollover)하는 경우
 - 일시금으로 수령한 시점부터 60일 내에 이를 다른 적격연금계좌로 이관하는 경우
 - 영구장애 및 전신장애 상태인 경우
 - 실업자인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의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국세청(IRS)이 근로자 개인의 세금채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 또한 불입한도가 초과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인출하지 않는 경우 매년 6%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며, 70.5세 이후 매년 인출해야 하는 최소연금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이 인출되지 않거나 이보다 적게 인출되는 경우 최소인출액과의 차액에 대해 50%의 소비세(excise tax)를 과세함

나) Roth IRA

- 1998년에 도입된 Roth IRA는, 일반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기여금(contribution)에 대

해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일정요건 충족시 인출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tax-free)하며, 따라서 개인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일반적으로 개인이 Roth IRA로부터 수령하는 수익(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기여금에서 발생)과 적격급여액(qualified distributions)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적격급여액(qualified distributions)은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Roth IRA 계좌 개설 후 최소 5년 이상 불입한 경우로서,
 - 59.5세가 넘어 연금액을 수급하거나, 장애로 인해 수급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산 또는 유산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
-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기여금 한도는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5천달러(50세 이상인 경우는 6천달러)와 개인이 당해연도에 벌어들인 과세대상 보수 중 적은 금액임

〈표 Ⅲ-4〉 「Roth IRA」 계좌에 대한 기여금 한도

소득신고 형태	개인의 조정총소득 요건	기여금 한도 ¹⁾
부부합산신고 또는 적격 미망인(홀아비) 신고	\$169,000 이하	기여금 한도인 \$5,000(50세 이상 \$6,000)까지 적립
	\$169,00~\$179,000	기여금 한도의 일부만 적립
	\$179,000 초과	기여금 불입 불가
당해연도에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부부개별신고한 경우	AGI가 \$0인 경우	기여금 한도인 \$5,000(50세 이상 \$6,000)까지 적립
	\$10,000 이하	기여금 한도의 일부만 적립
	\$10,000 초과	기여금 불입 불가
독신, 세대주 또는 당해연도에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부부개별신고한 경우	\$107,000 이하	기여금 한도인 \$5,000(50세 이상 \$6,000)까지 적립
	\$107,000~\$122,000	기여금 한도의 일부만 적립
	\$122,000 초과	기여금 불입 불가

주: 1) IRA 계좌 유형별 특징에 비추어, Roth IRA 계좌에 적립하는 기여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여금에 대한 '공제한도' 대신 기여금 '적립한도'를 부여함

자료: <http://www.irs.gov/>, IRS Publication 590,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2010," p. 58, Table 2-1. "Effect of Modified AGI on Roth IRA Contribution".

○ 단, 개인의 조정총소득 및 소득신고형태(filing status) 등에 따라 기여금 불입 한도가 달라짐

□ 만약 적격급여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좌에서 인출(other early distribution)한 연금액 중 과세되어야 하는 금액(taxable part of any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소득세가 부과됨

○ 이밖에도 Traditional IRA로부터 Roth IRA로의 전환 또는 적격퇴직연금²⁹⁾으로부터 Roth IRA로 이월(rollover)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계좌에서 조기 인출한 경우에도 10%의 추가 소득세를 과세함

□ 아울러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Roth IRA 계좌에 연간 불입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이 적립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인출하지 않았다면 초과기여금에 대해 패널티로 6%의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함

다) SIMPLE IRA

□ SIMPLE IRA는 1996년 신설된 제도로 소규모 기업(연간 5천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100인 이하)이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임

○ 401(k)처럼 개인 계좌에 기업이 지원하는 퇴직연금제이나, 운영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규정을 단순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401(k)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세전 급여에서 차감한 일정액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나 기여금과 추가기여금 적립한도는 각각 1만 1,500달러와 2,500달러로, 401(k)의 한도인 1만 6,500달러와 5,500달러보다 적음

□ SIMPLE IRA하의 사용자 기여금(Employer Contributions)은 적립하는 과세연도에 사업경비로 간주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세 공제 효과를 나타냄

29)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연금을 의미함

- 근로자는 적립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또한 SIMPLE IRA 계좌에 누적된 근로자 적립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이 허용됨
 - 만일 59.5세 이전에 가입기간 2년 미만인 SIMPLE IRA를 근로자가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로 25%(2년 이상 가입 후 인출시는 10%)의 소득세를 추가 부과함

라) SEP IRA

- SEP IRA는 1978년 기업이 복잡한 퇴직연금제도 대신 IRA 제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 SEP IRA는 이익공유제도(profit-sharing plan)³⁰⁾의 일부처럼 취급되고 있음
- 해당 plan 설정이 가능한 사용자(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자신을 위한 기여금에 대해 사업경비로 간주하고 이를 손금산입함
 - SEP IRA 계좌에 부담할 수 있는 총적립한도는 근로자 소득의 25%(자영업자는 세전 소득의 20%)와 4만 9천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근로자소득 최대인정액 24만 5천달러의 10%인 2만 4,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음
- SEP IRA 계좌에 누적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수급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됨
 - 근로자가 59.5세 이후 수급시 연금 급여는 통상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데 비해, 59.5세 이전 수급시에는 패널티 10%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됨

30)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 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허용한 연금제도이며 기여금 전액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함

〈표 Ⅲ-5〉 IRA 유형별 세제혜택

연금저축제도	세제 혜택	
	개인	사용자
Traditional 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또한 연금 급여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수령시점에는 통상소득으로 과세 • 기여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 6%의 excise tax를 부과 	사용자는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음
Roth 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Roth 계좌의 특성(세후 급여에서의 기여금 적립)으로 연금급여 인출시 비과세 • 기여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 6%의 excise tax를 부과 	상동
SIMPLE-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세전 소득에서 기여금을 각출하므로 소득공제 허용 • 또한 적립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급여를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기여금 손금산입 허용
SEP-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급여를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기여금 손금산입 허용

자료: 김재진 · 김진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 · 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2012

2) 의료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 의료저축계좌(HSA)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3년에 도입³¹⁾된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들에 의해 판매되기 시작함
 - HSA는 한 해 동안 일정한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 해당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들은 비과세 이자가 가산되어 65세 이후에 개인퇴직계좌(IRA)로 전환할 수 있는 저축성 계좌임
 - HSA는 의료 IRA라고도 함

31) IRC Sec. 223

- HSA는 ‘공제적용이 큰 의료보험플랜(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³²⁾’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고용인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저축계좌에 불입하는 일정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사전공제로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저축금은 과세하지 않음
 - 다만 해당되는 의료비는 여타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인출한 저축금을 의료비로 사용한 후 이를 공제받을 수는 없음
 -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보험(HDHP) 및 IRC Sec. 223(c)(3)에서 허가한 의료와 초과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됨
 - 실직한 경우 HSA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도 정당한 인출액으로 인정함
- 비과세되는 불입금은 가족보험의 경우 5,800달러, 개인보험의 경우 2,900달러를 연간 한도로 하며,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저축금은 과세될 뿐만 아니라 10%의 벌금이 추가 부과됨
 - 연령이 55세 이상이 되면 추가로 8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음
- HSA에 적립된 금액으로 CD Index 상품³³⁾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401(k)나 IRA의 형태로 타 금융기관에 이관(rollover)할 수 있음

3) 교육비용 충당을 위한 저축기금

- 미국에서는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등록금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rograms, QTP)³⁴⁾ 및 Coverdell 교육저축기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Coverdell ESA)³⁵⁾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32) 개인의 경우 연간 보험공제가 \$1,100 이상이며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가 \$5,500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가족보험의 경우 이 금액은 각각 \$2,200과 \$11,000임

33)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에 연동되는 금융상품

34) IRC Sec. 529

35) IRC Sec. 530

가) 등록금 저축기금(QTP)

- 의회는 개인이 부담하는 고등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정부나 사립대학교로 하여금 등록금 저축기금(QTP)를 운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등록금 저축기금은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바, 동 기금은 장래 등록금을 현재 지급하는 데 사용되거나 개방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되어 나중에 수증자(수령자 또는 수혜자)의 교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³⁶⁾

- 개인이 지정된 수증자를 위하여 불입한 저축금과 그 이자는 소득세가 면세되며 수증자가 면세 상태에서 인출하여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저축은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또한 1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됨
 - 또한 고등교육비용 이상의 자금이 인출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교육비용은 등록금과 관련 비용 이외 숙식비용을 포함하며 개인이 저축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 개인은 수증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 수증자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피부양자 모두를 포함하며 사촌도 포함될 수 있음

- 한편 등록금 저축기금에 기여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다른 증여와 합산하여 연간 수증자 1인당 13,000달러 비과세 한도의 적용을 받음
 - 다만 기증자가 지급한 일시불 금액을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36) 사립대학교는 후자의 방법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나) Coverdell 교육저축기금(Coverdell ESA)

- Coverdell 교육저축기금(Coverdell ESA)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 신탁기금으로 세후소득을 납입하고 그 대신 교육비용 사용목적의 인출시 과세하지 않는 방식임
 - 동 저축은 수혜자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2천달러를 불입할 수 있으며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혜자가 30세에 이르렀을 때 해당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남은 기금 잔액이 있다면 수혜자에게 분배되며 이는 과세됨
 - 동 신탁기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운용함

- 금전 불입자와 수혜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교육비용은 등록금, 교과서, 숙식비용 등을 포함하며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금은 수혜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추가 부과됨

- 금전 납입자가 조정된 총소득이 9만 5천달러를 초과하면 교육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감소함

4) 연방정부 저축채권(U.S. Savings Bond)³⁷⁾

- 연방정부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이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의 일종임
 -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연방정부 채권과는 달리, 연방정부 저축채권은 비교적 소규모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매입 후 그것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연방정부가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취함

-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저축채권의 이자는 과세되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

37) IRC Sec. 135

우 당해 이자는 비과세됨

- 1989년 이후 발행된 채권이어야 하며, 24세 이상의 개인에게 발행되어야 함
- 당해 채권은 적격한 고등교육비용(higher education expense) 지출을 위해 현금 상환되어야 함
 - 적격한 고등교육비용에는 자신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등록금, 적격 교육기관에의 등록비, 교육기관에의 기부금 등이 포함됨

□ 납세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 기록들을 보관해야 함

- 연방정부 저축채권의 일련번호, 발행일, 액면가액, 총상환가액(원금과 이자) 등과 관련된 문서
- 적격 고등교육비용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등의 서류

□ 만일 상환된 연방정부 저축채권의 가액이 적격 고등교육비용을 초과한다면 비과세할 이자소득금액은 제한됨

〈표 Ⅲ-6〉 미국의 대표적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구분	IRA	HSA	QTP	Coverdell ESA	US Savings Bond
도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itional IRA: 1974년 ■ Roth IRA: 1998년 ■ SIMPLE IRA: 1996년 ■ SEP IRA: 1978년 	2003년	2000년 이전	2000년 이전	1989년
조세혜택 목적	노후생활 대비	의료비 지출 대비	교육비용 대비	교육비용 대비	교육비용 대비
적용 요건	저축상품 가입에는 특별한 제한 없으나 신고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조세혜택 달라짐	HDHP 의료보험플랜에 가입한 개인이나 고용주	지정된 수혜자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저축함	지정된 수혜자(18세 미만)의 교육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불입자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여야 함	24세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적격한 고등교육비용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에 채권 상환 요청
조세혜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itional IRA: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 Roth IRA: 운용수익 비과세 ■ SIMPLE IRA: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 SEP IRA: 운용수익 과세이연 	소득공제 및 운용수익의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수혜자가 30세에 달할 때까지 운용수익 비과세	보유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혜택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itional IRA: 불입금액 연간 5,000달러 ■ Roth IRA: 불입금액 연간 5,000달러 ■ SIMPLE IRA: 불입금액 연간 11,500달러 ■ SEP IRA: 총적립금액 49,000달러 	가족보험은 연간 5,800달러, 개인보험은 연간 2,900달러	한도 없음	수혜자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불입액 2,000달러	한도 없음

2. 일본

가. 개요

- 일본에서는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별조치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축상품 관련 소득의 비과세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 연리 1% 미만의 당좌예금의 이자 비과세(소득세법 제9조 제1호)
 - 학교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등의 아동 또는 학생이 그 학교의 장의 지도를 받아 입금, 신탁하는 예금 또는 합동운용펀드의 이자 또는 수익분배 비과세(소득세법 제9조 제2호)
 -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의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소득세법 제10조)³⁸⁾
 - 2005년까지 노인소액예금, 노인우편저금의 이자 비과세 제도도 두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었고, 장애인 등 소액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로 개편됨
-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조의 2)
 -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조의 3)
- 한편 아래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별조치법상의 규정에 따른 총조세혜택 중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및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관련 조세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를 넘지 않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임

38) 동 소득세법 제10조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조세특별조치법 제3조의 4에서 예금 등의 불입총액 한도를 증가(300만엔에서 350만엔으로)시켜서 운용하고 있음

〈표 Ⅲ-7〉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상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엔, %)

항목	2009년		2010년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이자소득 등 비과세 특례	80	0,109	100	0,144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10	0,014	6	0,006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20	0,027	9	0,013
비과세·감면 저축 소계	110	0,150	115	0,163
총조세지출액	73,510	100	69,277	100

자료: 경제산업성(편), 『産業税制ハンドブック』, 参考資料 II, 2010.

- 다음에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별조치법상 ‘근로자 재산형성 관련 저축의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1) 장애인 등이 불입하는 소액의 비과세 저축상품

- 장애인 등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한 금융상품에 저축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다음(“장애인 등”)에 해당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4항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의 규정에 따라 신체 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자
 - 국민연금법 제37조의 2 제1항 (유족의 범위)에 규정된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과부(寡婦)
 - 국민연금법 제49조 제1항 (과부연금의 지급 요건)에 규정하는 과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과부

- 아동부양수당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 등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 장애인 등은 금융기관³⁹⁾ 영업소에서 취급하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저축상품(“예금 등”)에 자금을 불입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예금
- 합동운용신탁
- 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에 한함
- 증권투자신탁
 - 특정 목적의 신탁의 수익권 등에 한함

□ 상기 예금 등의 저축상품은 본국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익권에 대한 모집 · 신탁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비과세가 적용됨

□ 해당 예금 등에 입금 · 신탁 · 구매(“입금 등”)시에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 및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비과세 저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그 예금의 원금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비과세 저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금한 다른 예금의 원금과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예금의 이자
- 그 합동운용신탁 또는 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의 원금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비과세 저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탁한 다른 합동운용신탁 등 원금과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합동운용신탁 등의 수익 분배금

39) 은행, 신탁회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 그 증권투자신탁의 유가증권 액면금액 등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비과세 저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입한 다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등과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한 이자, 수익의 분배금, 잉여금의 배당금

- 장애인 등은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예금 등에 입금 등을 하는 날 이전에 먼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당해 금융기관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예금, 합동운용신탁, 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 등의 사항
 -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예금, 합동운용신탁, 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에 입금 등을 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현재의 최고한도액
 - 최고한도액은 1만엔 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며, 350만엔 이하하여야 함
 -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소를 통해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소의 명칭 및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최고한도액

-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이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최고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은 그 취지, 변경 후의 최고한도액 및 타 금융기관에의 최고한도액과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기관의 영업소를 통해 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영업소장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
 - 최고한도액(또는 변경 후 최고한도액)이 350만엔을 초과하여 기재된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당해 최고한도액과 이전 금융기관에 제출한 신고서상

의 최고한도액의 합계액이 350만엔을 초과하여 기재된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는 확인 인증을 받지 못한 비과세 저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비과세 저축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이 그 제출 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영업소장에게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 ‘근로자’가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계약’에 따라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 제2조 제1호상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계약’은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는 계약임

-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 계약’은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체결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함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당 저축상품에 금전 납입을 하여야 함
- 저축상품 불입금 및 이에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는 주택 소유 목적의 취득이나 주택의 증·개축의 지급대가로 사용되어야 함
- 근로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을 제외하고는 해당 저축상품에 대한 인출, 양도, 상환을 하지 못함
- 근로자의 주택 취득 등에 있어서 해당 저축상품 불입금 및 관련수익만으로 그 자금이 부족한 경우 고용주(또는 고용주가 가입한 고용주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

대금 지불을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함

- 저축상품에의 금전 납입은 당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입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재산형성 급부금 또는 재산형성 기금 급부금과 관련된 금전에 의해 납입하여야 함

□ 근로자는 금융기관⁴⁰⁾ 영업소에서 취급하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저축상품(“재산형성 주택저축”)에 자금을 불입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예금
- 합동운용신탁
- 증권투자신탁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생명공제의 공제부금

□ 상기 재산형성 주택저축 상품은 본국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익권에 대한 모집·신탁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비과세가 적용됨

□ 해당 재산형성 주택저축에 입금·신탁·구입·납입(“입금 등”)시에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성명, 주소와 근무처 등을 기재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형성 주택저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그 예금의 원금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금한 다른 예금의 원금과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예금의 이자
- 그 합동운용신탁 원금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탁한 다른 합동운용신탁 원금과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합동운용신탁의 수익 분배금
- 그 증권투자신탁의 유가증권 액면금액 등과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입한 다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등과의 합계액이

40) 은행, 신탁회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 내의 그 증권투자신탁과 관련한 이자, 수익
분배금

- 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생명공제회의 공제부금 포함)와 금액과 금융
기관의 영업소에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입한 다른 생명
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일시금 중 만기반려금액에서 당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
험의 납입보험료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보험차익)

□ 근로자는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을 위하여 금융상품에 입금 등을 하는 날 이전에 먼
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고서”)를 근무처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소 및 회사의 임금 지급자 및 근무처 등의 명칭 및 소재지
-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예금, 합동운용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 생명보험 또는 손
해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
-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소에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상품에 입금 등을 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현재의 최고한도액
 - 최고한도액은 1만엔 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며, 550만엔 이하하여야 함
-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소를 통해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⁴¹⁾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소의 명칭 및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최고한도액

□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해당 신고서에 기재한 최고한도
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는 그 취지, 변경 후의 최고한도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근무처 및 금융기관의 영업소를 통해 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해야 함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수리할 수 없음

41)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단에서 후술함

- 최고한도액(또는 변경 후 최고한도액)이 550만엔을 초과하여 기재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당해 최고한도액과 이전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 신고서상의 최고한도액의 합계액이 5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거나 또는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계속 입금을 통해서 이자소득 등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이동한 경우 당해 이동이 있었다는 취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직장 전근 신고서’)와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계속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자가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까지 그 취지 등을 기재한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계속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당해 출국을 한 후에도 당해 신청서에 기재한 회사와 계속해서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해당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재산형성 주택저축 계약을 하여 금전을 납입해 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불입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그 계약에 따른 금전을 납입하지 않으면, 마지막 불입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지급되는 당해 재산형성 주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분배 또는 보험차익 등은 비과세되지 않음
- 만일 주택 취득 이외 목적의 금전인출 등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5년에 지불한 이자, 수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당해이자, 수익 분배 또는 보험차익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등의 세무처리를 함

3)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 ‘근로자’가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계약’에 따라 조세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 제2조 제1호상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계약’은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는 계약임

-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계약’은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체결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함
 - 연금 수령자는 근로자 자신이어야 함
 -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5년 이상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금전 납입을 하여야 함
 - 연금지급 개시일은 60세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함
 - 연금급여는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연금급여 외에 근로자 사망, 재해, 질병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금저축의 인출, 양도, 상환을 하지 못함
 - 당해 저축상품에의 금전 납입은 당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입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재산형성 급부금 또는 재산형성 기금 급부금과 관련된 금전에 의해 납입하여야 함

- 재산형성 연금저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예금(주로 정기예금), 합동운용신탁, 증권투자신탁, 생명·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상품 등으로 재산형성 주택저축과 그 범위가 동일하며, 이로부터 연금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수익 분배, 보험차익 등을 비과세함
 -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 계약상의 연금 지급방식으로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동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

-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 신고서 및 신청서의 제출, 최고한도액 변경시의 절차, 설정 한도액 등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에서 살펴본 바와 대부분 유사함
 -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 신고서에 기재된 최고한도액은 550만엔(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385만엔)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산형성 비과세 연금저축 신고서에 기재된 최고한도액과 재산형성 비과세 주택저축 신고서에 기재된 최고한도액의 합계액은 550만엔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연금저축 계약에 따른 금전납입 적립기간 말일로부터 2월 내에, 연금지급 개시일, 연금 지급기간, 지불받는 연금의 금액 및 그 지급을 받는 시기 등을 기재한 신고서(재산형성 연금저축의 비과세 적용 확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만일 연금지급 개시일 전 인출(연금지급 개시일 후 5년 이내 인출 포함) 등이 발생하게 되면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당해 이자, 수익 분배 또는 보험차익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등의 세무처리를 함

〈표 Ⅲ-8〉 일본의 대표적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구분	학교장 지정 예금	장애인 등 소액예금	근로자 재형 주택저축	근로자 재형 연금저축
도입연도	1990년 이전	1990년 이전	1971년	1971년
조세혜택 목적	청소년 재산형성 및 교육비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주택마련 지원	노후생활 대비
적용 요건	학교교육법상 초·중·고교생이 학교장의 지도에 따라 예금함	장애인, 과부를 대상으로 함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주택취득자금 충당을 위해 5년 이상 불입해야 함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60세 이후 자신의 연금수급을 위하여 5년 이상 불입해야 함
조세혜택 방법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조세혜택 한도	한도 없음	총불입액 350만엔	근로자 재형 주택저축 및 근로자 재형 연금저축을 합하여 총 불입액 550만엔	

3. 영국

가. 개요

- 영국은 다수의 저축상품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보다는 연령별로 구분된 저축지원 조세제도를 운영중임
 -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해 일생주기(life cycle)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함
 - 청소년기에는 Junior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성인기에는 ISA에 가입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SA는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TESSA(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와 PEP(Personal Equity Plans)이 1999년에 통합된 것임
 - NSI(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는 국립저축은행(NSB)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저축상품임

- 영국은 연령별로 구분된 저축지원 조세제도를 운영하므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축상품이 많지 않음
 - 하지만 SAYE(Savings As You Earn)는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저축임

-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방법으로는 저축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함

-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인 ISA의 2012년 잔액은 3,910억파운드로 평가됨
 - 주식 · 지분 ISA와 현금 ISA의 잔액은 모두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Ⅲ-9〉 ISA 추세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dult ISA	stock & Shares ¹⁾	159,355	146,274	116,105	173,521	183,427	190,314
	Cash	127,661	142,801	158,384	169,391	191,424	200,607
	소계	287,016	289,075	274,489	342,912	374,851	390,921
Junior ISA		-	-	-	-	-	117
합계		287,016	289,075	274,489	342,912	374,851	391,038

주: 1) 2007년, 2008년 잔액에는 폐지된 PEP가 각각 79,250백만파운드, 67,670백만파운드 포함됨
 자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HMRC, 2012

□ 소득구간이 1만파운드부터 2만파운드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7,185계좌를 개설함

○ 1파운드부터 3천파운드까지의 잔액을 가진 ISA 계좌가 7,886계좌로 가장 많음

〈표 Ⅲ-10〉 2009~2010년 소득분포별 ISA 계좌수

(단위: 천계좌)

소득구간	ISA잔액 ¹⁾								
	£1 ~2,999	£3,000 ~5,999	£6,000 ~8,999	£9,000 ~11,999	£12,000 ~14,999	£15,000 ~19,999	£20,000 ~29,999	£30,000 이상	소계
£0 ~4,999	1,262	524	264	168	118	223	127	182	2,868
£5,000 ~9,999	1,323	736	410	275	207	309	278	429	3,968
£10,000 ~19,999	2,339	1,210	728	494	367	646	509	894	7,185
£20,000 ~29,999	1,474	707	429	269	207	360	272	559	4,277
£30,000 ~49,999	1,123	610	391	255	191	307	242	497	3,616
£50,000 ~99,999	303	237	174	108	91	147	129	305	1,495
£100,000 이상	62	68	53	35	30	50	49	143	489
합계	7,886	4,092	2,448	1,604	1,211	2,041	1,606	3,010	23,898

주: 1) stock&share ISA는 투자자산의 시가로 평가함
 자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HMRC, 2012

- ISA에 대한 조세지출은 2011~2012년, 2012~2013년에 각각 17억파운드와 17.5억파운드로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의 0.53%와 0.54%를 차지함
 -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은 추정이 불가능한 것과 최근 2년간 조세지출액이 5천만파운드인 것을 제외한 것임

〈표 Ⅲ-11〉 주요 저축상품의 조세지출

(단위: 백만파운드, %)

구분	2011~2012		2012~2013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개인저축계좌(ISA)	1,700	0.53	1,750	0.54
주식매수선택권부 저축(SAYE)	185	0.06	120	0.04
국립저축은행의 보통예금(NSI)	250	0.08	250	0.08
소계	2,060	0.67	2,070	0.65
조세지출액(main expenditure)	319,875	100	324,775	100

자료: <http://www.hmrc.gov.uk/statistics/expenditures.htm#2>

나. 대표적인 비과세 · 감면 저축상품

1) 국립저축은행의 보통예금(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NSI)

- 국립저축은행(National Savings Bank)에서 개설한 보통예금(Ordinary deposits)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70파운드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
 - 하지만 2004년 1월 29일 이후부터 국립저축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 국립저축은행은 1969년에 우체국의 금융부문이 분리되어 설립됨
 - 국립저축은행이 설립되면서 우체국에서 취급하던 저축계좌(savings account)가 보통예금으로 개명됨
 - 우체국의 저축계좌는 1861년에 근로소득자의 저축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입됨

2)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

- ISA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예금(계좌)임
 - ISA는 영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PEP와 TESSA를 통합하여 1999년 4월 6일에 도입됨
 - TESSA는 현금 ISA로 전환되었고 PEP은 주식·지분 ISA로 전환됨
 - 개인지분저축은 1999년 4월 6일에 주식·지분 ISA로 대체됨
 - ISA는 개인자산을 주식·지분, 현금 및 펀드 등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는 종합계좌임
 - 동일 과세연도 중에 현금 ISA와 주식·지분 ISA는 각각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음

- ISA의 유형
 - 현금 ISA: 비과세 저축예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
 - 주식·지분 ISA: 비과세 투자구좌로 주식, 지분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양도할 경우 자본이득이 발생함

- 투자자 요건: 16세 이상으로 영국 거주자
 - 16세가 경과한 후에 계좌의 개설이 가능
 - 다만 주식·지분 ISA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하여 영국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거주자가 아니어도 가능

- 투자한도: 매년 조정되며 2012/13년 기준으로는 연간 11,280파운드임
 - 이 중 현금 ISA에는 5,640파운드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를 주식·지분은 ISA에 투자할 수 있음
 - 2011/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680파운드까지 저축할 수 있음

- ISA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⁴²⁾

○ ISA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 신고의무도 없음

3) 어린이 개인저축계좌(Junior ISA)

- 어린이 개인저축계좌: CTF(Child Trust Fund) 미적용 어린이의 저축 증진을 위하여 2011년 11월 1일에 도입함
- 도입배경: CTF의 경우 어린이의 출생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
 - Junior ISA는 보조금 지원은 없으나 저축한도를 늘려 어린이를 위한 저축을 증대시키려 함
- 가입대상: CTF가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가 가입함
- 저축한도: 연간 3,600파운드
- 계좌의 명의는 어린이로 할 수 있으며 저축은 친권자, 직계존비속, 친구 등이 할 수 있음
- 수익자인 어린이가 18세 생일이 경과한 후에 인출 가능
 - 다만 어린이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망 시에는 친권자가 인출 가능
- 만기 후에는 사용처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고 자동적으로 ISA로 전환됨

42) Sections 694, to 701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Section 151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참고〉 어린이신탁펀드계좌(Children Trust Fund Account, CTF)

- CTF는 어린이가 받는 아동수당에 대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저축상품으로 2002년 9월 1일에 도입됨
 - 국세청은 아동수당 수급대상 어린이에게 출생 후 금융계좌를 개설한 시점과 7세가 되는 시점에 각각 250파운드의 CTF 바우처를 발급
 -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500파운드의 CTF 바우처를 발급
- 가입대상: 영국에 거주하고 아동수당(children benefit)을 받는 어린이
 - 아동수당: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성인에게 어린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대상자녀가 첫째이거나 독자인 경우 주당 20.3파운드를 지급하고 나머지인 경우 13.4파운드를 지급함
- 저축한도: 친권자나 보호자 등은 CTF에 연간 1,200파운드까지 저축할 수 있음
- 수익자인 어린이가 18세 생일이 경과한 후에 인출가능
- 2011년 11월에 폐지되어 Junior ISA로 대체됨

4) 주식매수선택권부 저축(Save As You Earn, SAYE)

- SAYE는 주주자본주의의 창출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급여 중 일부에 대해 저축하게 하는 저축상품으로 1980년에 대처정부에 의해서 도입됨
 - 취득하는 주식은 시가의 2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됨

- SAYE는 근로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음
 - 또한 근로자에게 옵션의 부여나 행사와 관련한 조세부담을 제거함
 - SAYE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함

- 가입대상자: 근로자와 상근이사(full-time director)

- 주식요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주이어야 함
 - 다만 보통주의 발행회사는 다른 회사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아야 하고 상장된 주식의 발행회사의 자회사가 아니어야 함

-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
 - 주식매수선택권 실행 시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므로 주식의 시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시에는 양도가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담함
 - 주식매수선택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5) 기타

가) 투자생명연금(PLA; Purchase Life Annuity)

- 투자생명연금은 수령방식이 연금인 생명보험증권을 의미함
 - 투자생명연금에 대한 투자는 연금으로 지급할 생명보험증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수령하는 금액 중 투자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보험료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됨

나) FOTRA(Free of Tax to Residents Abroad) 증권

□ 특정한 정부발행 유가증권(FOTRA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자가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그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자본이득은 비과세됨

○ FOTRA 증권은 ① The Finance (No. 2) Act 1931 sec. 22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행한 재무성의 증권과 ② 1998년 4월 6일 이전에 발행한 금테증권(gilt-edged securities) 임

－ 금테증권은 영국정부가 발행한 증권

〈표 Ⅲ-12〉 영국의 대표적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구분	NSI	ISA	Junior ISA	SAYE
도입연도	1861년(2004년 이후 신규가입 불가)	1999년	2011년	1980년
조세혜택 목적	재산형성 지원	저축·투자를 통합적으로 장려	어린이의 필요자금 확보	주주자본주의 창출
적용 요건	국립저축은행의 보통예금만 적용대상	16세 이상 영국거주자	16세 이하 영국인	가입대상이 근로자이어야 하고, 상장된 주식을 받아야 함
조세혜택 방법	비과세	이자·배당·자본 이득 비과세	이자·배당·자본 이득 비과세	저가취득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 양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
조세혜택 한도	이자소득 중 70파운드까지만 비과세	연간 11,280파운드 (이중 현금 ISA는 5,640파운드까지)	연간 3,600파운드	없음

4. 프랑스

가. 개요

- 프랑스는 특별한 가입요건이 없어도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상품과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이 있음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축상품으로는 A저축(Livret A)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함
 - 대부분의 저축상품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되지만 청색저축은 상호신용금고에서만 취득하는 저축상품임

- 프랑스는 주택취득, 친환경산업 육성,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장려, 노후대비 등을 위한 저축상품에 조세혜택을 부여함
 - 이와는 달리 A저축(Livret A), 청색저축(Livret Bleu), 중·단기저축(CAT)은 일반인들의 재산형성의 도움을 주고자 조세혜택이 부여됨

- 조세혜택의 방법에는 저축금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금의 운영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제도가 있음
 - 대부분의 조세혜택은 저축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비과세임
 - 연금방식으로 수급하는 저축인 보통은퇴저축(PERP)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제공함

- 프랑스의 저축상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
 - 총저축액(Comptes sur livrets)은 2011년, 2012년에 각각 5,593억유로, 6,117억유로로 증가하는 추세임

- 총저축액 중 A저축이 2011년과 2012에 각각 34.3%와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그 밖에 지속성장저축, 보통예금저축, 주택저축계좌·주택소유정기적금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표 Ⅲ-13〉 주요 저축상품 추세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A저축	171,380	33.0	191,810	34.3	222,383	36.4
청색저축	22,115	4.3	22,841	4.1	24,662	4.0
주택저축계좌· 주택소유정기적금	36,137	7.0	36,089	6.5	35,224	5.8
지속성장저축	67,961	13.1	69,370	12.4	91,854	15.0
보통예금저축	54,351	10.5	52,442	9.4	51,669	8.4
청소년저축	7,045	1.4	7,001	1.3	6,950	1.1
기타 저축상품	159,835	30.8	179,724	32.1	179,105	29.3
합계	518,824	100.0	559,272	100.0	611,737	100.0

자료: <http://www.banque-france.fr/fileadmin/statistiques/gb/base/>

- 총조세지출 중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의 비중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94%와 2.15%로 추정됨
 -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금액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
-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주택저축계좌·주택소유정기적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보통저축과 A저축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큼

〈표 Ⅲ-14〉 프랑스의 주요 저축상품 조세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0		2011		2012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조세지출	비중
비과세 저축 상품	A저축	190	0.26	220	0.33	300	0.46
	청색저축	25	0.03	25	0.04	30	0.05
	지속성장저축	80	0.11	70	0.10	90	0.14
	보통예금저축	50	0.07	50	0.07	55	0.08
	청소년저축	10	0.01	15	0.02	10	0.02
	보통저축	370	0.51	370	0.55	370	0.56
	주택저축계좌· 주택소유정기적금	560	0.77	560	0.83	560	0.85
	소계	1,285	1.77	1,310	1.94	1,415	2.15
총조세지출액(추정)		72,714	100	67,500	100	65,929	100

주: 1. 보통은퇴저축(PERP), 단·증기적금(CAT)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계액이 제시되지 않음
 자료: DEPENSES FISCALES 2012

나.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1) A저축(Livret A)

- A저축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루이 18세에 의해 1818년에 도입됨
 - 이 시기 정부는 공적인 저축을 확보할 수 있었음

- A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는 저축상품⁴³⁾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축상품임
 - 1인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음
 - 가장 대중적인 저축상품으로 4천만계좌 이상 개설됨

43) Article L221-3 CMF

- 2009년 1월 1일 이후 모든 은행에서 취급 중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우체국(La Poste, 현재는 Caisse nationale d'épargne)과 저축은행(Caisse d'Epargne)에서만 취급
 - 저축은행이 최초로 취급한 이후 우체국이 1875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함⁴⁴⁾
- A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인, 일반조세법 제206조에 따른 조합(associations) 등임
 - 개인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개설 시 법정대리인이 불필요함
 - 또한 가족당 4개 계좌까지 개설 가능
- 적용이자율은 2013년 2월 현재 1.75%이고 저축한도는 1명당 22,950유로임
 - 이자율은 15일마다 계산되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1년에 4회 조정되는데 2013년 1월까지 2.25%이었음
 - 저축한도의 계산 시 이자는 제외됨
- A저축은 7일간 800유로까지 현금인출이 가능지만 현금지급기에서는 500유로까지만 가능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2) 청색저축(Livret Bleu)

- 청색저축은 A저축의 도입 후 상호신용금고가 A저축과 유사한 저축상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 즉, 청색저축은 상호신용금고(Caisses de Credit Mutuel)에서 취급하는 A저축임
 - 하지만 상호신용금고도 1979년부터 A저축을 취급함⁴⁵⁾

44) <http://patrimoine.trader-finance.fr/livret-epargne/histoire-du-livret-a-de-louis-xviii-a-nos-jours.html>

45) <http://patrimoine.trader-finance.fr/livret-epargne/histoire-du-livret-a-de-louis-xviii-a-nos-jours.html>

- 1인이 1개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나 A저축과는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 대부분의 특성이 A저축과 동일하나 최소 개설금액은 A저축의 경우 1.5유로인 데 비해 청색저축은 15유로임

- 적용이자율은 2013년 2월 현재 1.75%이고 저축한도는 1명당 22,950유로임
 - 15일마다 계산되는 이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1년에 4회 조정됨
 - 이자율은 2013년 1월까지 2.25%이었음
 - 저축한도에는 이자는 제외됨

- 청색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인임
 - 개인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개설 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함
 - 또한 가족당 4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함

- 청색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3) 지속성장저축(LDD)

- 지속성장저축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해 환경보호산업에 투자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일에 도입된 저축상품임

- 가입대상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임

- 적용이자율은 2013년 2월 현재 1.75%이고, 저축한도는 1명당 12,000유로임
 - 15일마다 계산되는 이자의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1년에 4회 조정되며 2013년 1월까지 2.25%이었음

-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4) 보통예금저축(Livret d'Epargne Populaire, LEP)

- 보통예금(LEP)은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1982년에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함
- 보통예금의 가입가능 대상은 저소득요건을 충족한 개인이어야 함
 - 저소득요건은 2012년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가 769유로 이하인 경우에 충족됨
 - 또한 가족당 2개 계좌만 개설 가능
- 보통예금의 저축한도는 1명당 7,700유로이며 적용이자율은 2013년 2월 현재 2.25%임
 - 15일마다 계산되는 이자의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조정되며 2013년 1월 현재 2.75%임
 - 한도에는 이자는 제외됨
-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5) 청소년저축(Livret Jeune)

- 청소년저축은 청소년의 저축 장려를 위하여 혜택을 부여한 저축상품으로 저축으로 가입가능 대상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 개인
 - 연령 요건: 12세에서 25세 사이의 개인
- 적용이자율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나 최소이자율은 2013년 1월 현재 2.25%이며 저축한도는 1명당 1,600유로임
 - 이자는 15일마다 계산되며, 저축한도에 이자는 제외됨
-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6) 보통저축(plan d'épargne populaire, PEP)

- 보통저축(PEP)은 장기투자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상환 시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음⁴⁶⁾
 - 다만 2003년 9월 25일 이후에는 신규로 보통저축을 가입할 수 없음

- 투자금액의 한도는 92,000유로이며 적용이자율은 2013년 2월 현재 2.25%임
 - 2013년 1월 현재 2.75%

- 8년간 인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연금(일시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⁴⁷⁾
 - 최초 4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3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함
 - 최초 4년이 경과한 이후 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19%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함

- 다만 투자자가 사망한 경우나 투자자나 그의 배우자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나 사업자인 투자자의 사업이 청산한 경우 등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7) 주택저축계좌(Compte epargne logement, CEL)

- 주택저축계좌는 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 1975년에 도입되었음

- 저축납입액은 300유로이며 이후 최소 75유로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최대저축액은 15,300유로이며 인출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잔액은 최소한 300유로가 유지되어야 함

46) article 157-22° CGI

47)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net/contents/placements/>

○ 만기는 없음

□ 저축이자율은 현재 1.25%이나 프랑스 은행(la Banque de France)에서 2월 1일과 8월 1일에 이자율을 조정함

□ 주택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사회부담금은 면제되지 않음

8) 주택소유정기적금(Le Plan d'Épargne Logement, PEL)

□ 주택소유정기적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자금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금으로 가족 중 1인만이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225유로 이상을 납입한 후 매달이나 매분기나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함

○ 총적금액은 61,2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간 납입금액 합계액의 최소한도는 540유로임

○ 매달, 매분기, 매반기 납입금액의 최소한도는 각각 45유로, 135 유로, 270유로임

□ 적금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임

○ 10년 이후에는 적금액을 불입할 수는 없으나 5년간 적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됨

○ 1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일반예금으로 전환되며 은행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음

□ 적금기간 동안 아무때나 적금을 해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최초 불입일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대출과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 PEL 이자율은 개시일에 확정되며 2011년 3월 1일 이후 2.5%를 적용중임
 - 2011년 3월 1일 이후 주택소유정기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5,000유로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혜택이 있는 대출은 최대 92,000유로까지 가능함
 - 보조금 혜택이 있는 대출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2011년 이후 개설된 PEL을 보유하여야 함
 - 대출금액은 최소 5,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보조금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PEL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2/5까지 가능
 - 예를 들어, PEL이 50,000유로일 때 보조금은 주택의 정상적인 개량을 목적으로 한 대출인 경우에는 1,525유로이고 에너지절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 1,000유로임
 - 대출금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현재 주택의 개량을 위한 것임
 - 대출기간은 2년에서 15년까지임

- 주택소유정기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1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소득세에서 비과세됨

9) 보통은퇴저축(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PERP)

- 보통은퇴저축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된 저축상품⁴⁸⁾
 - 보통은퇴저축의 형태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저축계약, 종신연금계약, 종신연금계약으로 전환되는 저축계약이 있음
 - 적금은 일시금으로 적금총액의 2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됨

48) <http://vosdroits.service-public.fr/particuliers/F10259.xhtml>

-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함
- 보통은퇴저축의 가입을 위한 요건은 없음
 - 보통은퇴저축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연령요건을 별도로 두지는 않음
- 보통은퇴저축은 금액의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음
 - 하지만 보통은퇴저축에 대한 인출은 은퇴연령까지 금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출이 가능함
 - 장애인이 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 실업수당 수급의 중단
 - 개인파산
 - 법정청산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 한편 보통은퇴저축의 수익자가 수급받을 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잔여 연금은 연금의 형태로 생존한 배우자나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될 수 있음
- 보통은퇴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함
 - ① Min(201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여 수취한 수입금액(revenus professionnels)에서 사회부담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0%, 28,282유로)
 - ② 3,535유로

10) 단 · 중기적금 (compte à terme, CAT)

- 단 · 중기적금은 단기나 중기 동안 은행에 적금을 하는 상품임
 - 1969년에 도입되었으며⁴⁹⁾ 1990년부터는 이자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됨

49) Decisions de Caractere General numeros 69-02 et 69-03

- 가입 시에는 적금불입액, 기간, 이자율, 만기전 출금시 벌칙규정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함
 - 가입시점에 총적금액을 모두 납입함
 - 적금기간: 최소 한달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이자율은 은행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음
 - 적금기간 동안 적금의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단 · 중기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표 Ⅲ-15〉 프랑스의 대표적 비과세·감면 저축상품

구분	Livret A (Livret Bleu)	LDD	LEP	Livret Jeune	PEP
도입연도	1818년(1979년)	2007년	1982년		1990년 이전
조세혜택 목적	국민의 저축 장려	환경산업 투자자금 확보	저소득자 재산 형성	청소년 저축 장려	장기투자 장려
적용요건	프랑스 거주자	프랑스 거주자	납부소득세 가 769유로 이하인 개인	12~25세 개인	프랑스 거주자
적용이자율	1.75%	1.75%	2.25%	2.25%	2.25%
저축한도	1인당 22,950유로	1인당 12,000유로	1명당 7,700유로	1명당 1,600유로	1명당 92,000유로
조세혜택 방법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혜택 한도	1인당 22,950유로	1인당 12,000유로	1명당 7,700유로	1명당 1,600유로	1명당 92,000유로
구분	CEL	PEL	PERP	CAT	
도입연도	1975년	1985년 이전	2004년	1969년	
조세혜택 목적	주택마련 지원	주택마련 지원	노후자금 지원	저축지원	
적용요건	프랑스 거주자	프랑스 거주자	프랑스 거주자	프랑스 거주자	
적용이자율	1.25%	2.5%	은행자율	은행자율	
저축한도	1명당 15,300유로	1명당 61,200유로 (보조금이 있는 경우 92,000유로)	-	-	
조세혜택 방법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분리과세	
조세혜택 한도	1명당 15,300유로	1명당 61,200유로 (보조금이 있는 경우 92,000유로)	Max[Min(근로소 득, 사업소득 수입금액×10%, 28,282), 3,535]	-	

IV. 국제비교

1. 조세특례 운용 비교

가. 한국

- 한국의 저축상품 중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은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등임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삭제되었지만 「소득세법」 제51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특정한 저축상품별로 개별적인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중임
- 특례저축상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녹색저축이 있음
 - 청약저축 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해양보장관이 지정하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서만 취급할 수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만 취급할 수 있음
 - 녹색저축 중 예금은 은행이나 체신관서만이 취급할 수 있음

나. 미국

- 미국의 저축상품 중 개인퇴직계좌(IRA), 의료저축계좌(HSA), 등록금저축기금(QTP), Coverdell교육저축기금(Coverdell ESA), 연방정부저축채권(US Savings Bond) 등에

서 조세특례가 적용됨

- 미국의 경우, 70.5세 미만이면 특별한 가입요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저축 조세특례로서 IRA가 있음
 - IRA에는 사용자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 세전소득으로 저축하는지 세후소득으로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Traditional IRA, Roth IRA, SIMPLE IRA, SEP IRA로 분류됨
- 반면에 HSA, QTP, Coverdell ESA, US Savings Bond 등은 특정보험 가입 여부, 연령요건이나 용도요건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조세특례임
- QTP는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서, US Savings Bond는 연방정부에서만 취급하는 저축상품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취급이 제한됨

다. 일본

- 일본의 저축상품 중 학교교육법상 학생의 특정 예금이나 신탁, 장애인 등이 불입하는 소액예금, 재형 주택저축, 재형 연금저축 등에서 조세특례가 적용됨
 - 일본의 경우,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저축상품은 그 가입대상과 가입조건을 명확히 함
 - 학교교육법상의 학생이 학교장의 지정에 따른 특정 예금이나 신탁에 저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관련 수익은 비과세함
 - 장애인, 과부 등이 350만엔 이내의 소액 저축을 하는 경우 관련수익을 비과세함
 - 근로자재산형성축진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취득이나 노후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경우 불입액 550만엔까지 발생하는 관련 소득을 비과세함
 - 상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저축상품에는 예금, 합동운용신탁, 증권투자신탁,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재형저축에만 해당) 등으로 다양하며, 은행, 신탁회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음

라. 영국

- 영국의 저축상품 중 ISA, Junior ISA, SAYE, NSI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임

- 영국의 경우,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관하여 라이프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금이나 주식·지분의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TESSA와 PEP을 1999년에 ISA로 통합하여 일원화 함
 - ISA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저축지원제도인 CTF 제도는 2011년에 Junior ISA로 대체됨
- 저축의 조세지원은 연령에 따라 2개로 구분되어 적용됨
 - 연령별로 청소년기에는 Junior ISA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ISA가 적용됨
- 특정업계만 취급하는 저축상품에는 NSI가 있으나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함
 - 국립저축은행(NSB)에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마. 프랑스

- 프랑스의 저축상품 중 A저축(Livret A), 청색저축(Livret Bleu), 보통저축(PEP), 보통예금저축(LEP), 청소년저축(Livret Jeune), 주택저축계좌(CEL), 주택소유정기적금(PEL), 보통은퇴저축(PERP), 단·중기적금(CAT) 등에서 조세특례가 적용됨
- 프랑스의 경우, 특별한 가입요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음
 - 가장 보편적인 A저축 등의 경우 가입요건을 규제하지 않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임
 - 반면에 청소년저축, 보통예금저축 등은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조세특례임
- 청색저축은 상호신용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저축상품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취급이 제한됨

〈표 IV-1〉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 관련 조세특례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표적인 저축상품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IRA, HSA, QTP, Cocerdel, ESA, US Savings Bond	학생의 예금·신탁,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재형 주택저축, 재형 연금저축 등	ISA, Junior ISA, SAYE, NSI	Livret A, Livret Bleu, PEP, LEP, Livret Jeune, CEL, PEL, PERP 등
저축상품 특례제도 운영방법	다수 상품에 특례적용	다수 상품에 특례적용	다수 상품에 특례적용	일원화	다수 상품에 특례적용
일원화방법	n/a	n/a	n/a	연령으로 구분	n/a
특정업계취급 상품	일부 있음 ¹⁾	일부 있음 ²⁾	없음	없음	일부 있음 ³⁾

주: 1) 청약저축 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서만 취급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만 취급하며, 녹색저축은 은행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것임

2) QTP는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서, US Savings Bond는 연방정부에서만 취급하는 것임

3) NSI는 국립저축은행(NSB)에서만 취급하는 것임

2. 조세특례 목적 비교

가. 한국

□ 우리나라는 조세지원의 목적에 따라 저축상품별로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이 있음
- 주식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 조세특례를 제공함
-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는 녹색저축이 있음
- 일반적인 목돈마련과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

련저축,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이 있음

– 재형저축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은 농어민과 노인·장애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것임

-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

나. 미국

- 미국은 주로 노후 대비, 의료비 및 교육비 확보 목적의 저축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IRA는 처음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었으나, 지금은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은퇴 후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금저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HSA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들에 의해 판매되기 시작함

- QTP는 등록금 등의 교육비용 확보를 위해서, Coverdell ESA는 18세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기초교육비 확보를 위한 신탁저축임

- 고등교육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US Savings Bond의 상황에는 조세혜택이 부여됨

다. 일본

- 일본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확보, 근로자의 주택취득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특정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학교교육법상 학생이 학교장의 지정에 따른 특정 예금이나 신탁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비과세 하고 있음

- 장애인, 과부의 350만엔 이내의 소액저축에 대해서는 관련 이자 및 수익분배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음

- 근로자의 주택취득을 위한 재형 주택저축,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재형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불입액 합계 550만엔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분배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음

라. 영국

- 영국은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을 일원화하여 관리함
 -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Junior ISA를 가입하여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ISA를 가입하여 조세혜택을 얻음
 - 성인이 되는 경우 Junior ISA는 ISA로 전환됨
 - 자사주 취득을 위한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SAYE가 있음

마. 프랑스

- 프랑스는 조세지원의 목적별로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저축상품에는 주택저축계좌(CEL), 주택소유정기적금(PEL)이 있음
 -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에는 지속성장저축(LDD)이 있음
 -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에는 보통예금저축(LEP)이 있음
 - 저소득요건은 소득세 납부액이 769유로 이하임
 - 청소년의 저축장려 등을 위한 저축상품에는 청소년저축(Livret Jeune)이 있음
 - 노후자금의 저축을 위한 저축상품에는 보통저축(PEP)과 보통은퇴저축(PERP)이 있음
 -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은 수급방법을 연금형태로 할 수 있음
 - 조세특례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저축상품으로는 A저축(Livret A)과 청색저축(Livret Bleu) 등이 있음
 - A저축은 취급금융기관에 제한이 없으나, 청색저축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함

수 있음

- A저축과 청색저축은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표 IV-2〉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의 조세특례 목적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주택취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재형 주택저축		CEL, PEL
주식취득	우리사주조합기금			SAYE	
친환경	녹색저축				LDD
생계비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등	ISA	LEP
교육비 확보		QTP, Coverdell ESA, US Savings Bond	학생의 특정 예금 및 신탁	Junior ISA	Livret Jeune
노후 대비	연금저축	IRA	재형 연금저축		PEP, PERP
자본시장 안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기타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조합등예탁금	HSA		NSI	Livret A, Livret Bleu, CAT

3. 조세특례 방법 비교

가. 한국

- 우리나라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저축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운용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입된 저축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에는 장기주식형저축, 주택청약저축이 있으며,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저축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에는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장기저축성보험이 있음
 - 저축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이 있음

나. 미국

- 미국의 저축상품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함
 - IRA는 연금저축 불입금이 세전급여 또는 세후급여인지 여부, 사용자 지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짐
 - Traditional IRA와 SIMPLE IRA는 소득공제 혜택 및 운용소득의 과세이연 혜택이 있음
 - Roth IRA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운용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있음
 - SEP IRA는 100% 사용자 지원이므로 운용소득 과세이연 혜택만 존재함
 - HSA는 불입시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인출한 운용소득은 비과세됨
 - QTP 및 Coverdell ESA는 교육비 지급을 위한 인출한 운용소득은 비과세됨
 - 고등교육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US Savings Bond의 상환시 보유기간 이자수익은

비과세됨

다. 일본

- 일본은 다음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학교교육법상 학생이 학교장의 지정에 따른 특정 예금이나 신탁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음
 - 학교교육법상의 학생이 학교장의 지정에 따른 예금, 신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수익분배
 - 장애인, 과부가 저축하는 소액의 예금, 합동운용신탁, 증권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분배
 - 근로자의 재형주택저축 및 재형연금저축의 경우 인출일이나 연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수익분배

라. 영국

- 영국은 저축상품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ISA, Junior ISA는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함
 - NSI와 SAYE는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함

마. 프랑스

- 프랑스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저축금의 소득공제와 저축금 운용소득의 비과세·저율과 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납입된 저축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에는 보통은퇴저축(PERP)이 있음
 - 저축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에는 A저축(Livret A), 청색저축(Livret Bleu), 지속성장저축(LDD), 보통예금저축(LEP), 청소년저축(Livret Jeune), 보통저축(PEP), 주택저축계좌(CEL) 및 주택소유정기적금(PEL)이 있음

- 저축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에는 단·중기적금(CAT)이 있음

〈표 IV-3〉 주요국별 대표적 저축상품의 조세특례 방법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저축금 납입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출자 금	Traditional IRA, SIMPLE IRA, HSA			PERP
운용 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 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Roth IRA, HSA, QTP, Coverdell ESA, US Savings Bond	학생의 예금·신탁, 장애인 등의 소액 저축, 재형 주택저축, 재형 연금저축	NSI, ISA, Junior ISA, SAYE	Livret A, Livret Bleu, LDD, LEP, Livret Jeune, PEP, CEL, PEL
	저율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CAT
	과세이연	연금저축	Traditional IRA, SIMPLE IRA, SEP IRA			
자본 이득	비과세				ISA, Junior ISA	
기타		농어가목돈마련저 축은 상속증여세 비과세				

V. 요약 및 시사점

1. 저축상품별 조세지원제도 운영

-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은 개별 저축상품별로 별도의 조세지원을 운영하는 방식과 저축상품을 세법상 통합하여 조세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는 개별 저축상품별로 별도의 조세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을 일원화함
 - 다만, 일본의 근로자 재형 주택저축과 근로자 재형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그 조세혜택 규모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구입, 노후 대비, 생계비 마련 등 개인의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저축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저축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프랑스임
 - 프랑스는 노후 대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한 조세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되는 보편적인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운영 중임
 -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달리 무상의료로 인해 의료비를 위한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없음

- 이에 비해 미국, 일본, 영국은 조세지원을 하는 저축상품이 상대적으로 적음
 - 미국의 경우 노후 대비와 의료비 확보를 위한 저축상품에 중점적인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적임

- 일본의 경우 장애인·과부 등의 취약계층 지원과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부분으로 간소화함
 - 영국은 다양한 목적의 조세지원 저축상품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임
-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원화 또는 다변화는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제도적 환경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의료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므로 의료비를 위한 저축상품에 조세지원이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노후보장이나 의료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저축상품의 필요성이 낮아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을 일원화함

2. 조세지원규모

- <표 V-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총조세지출액의 7.85%에 달함
- 미국과 프랑스의 저축상품 조세지출액이 총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넘지 않는 수준이고, 일본과 영국의 경우 1%에 미달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즉,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V-1〉 주요국별 저축상품의 조세지출액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연도	2012	2010	2010	2012/13	2012
화폐단위	억원	억달러	억엔	억파운드	억유로
저축상품 조세지출액	25,120	287	115	20.7	14.2
총조세지출액	319,871	11,080	69,277	3,248	659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	7.85%	2.55%	0.16%	0.65%	2.15%

3. 조세지출과 소득분포

- 〈표II-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총자산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짐
 - 2012년 소득 1분위의 자산 대비 저축 비중은 11.0%였으나 소득 5분위의 자산 대비 저축 비중은 20.3%임
 - 적립식저축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예치식저축보다 적립식저축을 더 많이 이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를 취약계층으로 제한하지 않은 저축상품이 다양함
 - 이러한 저축상품은 적립식저축의 비중이 높은 고소득가구에서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

〈표 V-2〉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

저축상품	납입한도
장기주식형저축	3,600만원
장기회사채형저축	5,000만원
녹색저축	2,000만원
세금우대종합통장	1,000만원 (60세 이상 노인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투자	액면가액 3억원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의 저축금액이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의 종류도 다양함
- 반면 〈표 III-10〉에 따르면 영국의 ISA의 경우 소득구간이 1만파운드부터 2만파운드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구좌를 개설함
 -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ISA를 통한 조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또한 저축액에 대한 총액한도가 존재함
- 따라서 영국의 경우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을 ISA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지원액을 총액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ISA에 많이 가입함
- 일본의 경우 조세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입자요건이 있음
 - 2005년까지 노인의 저축상품에 대하여 일부 비과세를 해 왔으나,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층인 노령층에까지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2006년부터 동 혜택을 폐지한 바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 조세지원제도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상품 조세지원제도를 모두 유지함

4. 조세지원 대상과 목적의 다양성

- 저축은 미래의 자금지출이 미래의 자금수입보다 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금을 적립하는 것임
 - 주택의 구입, 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급 시 자금지출이 자금수입보다 클 가능성이 높음
 - 은퇴 이후에도 미래의 자금지출이 미래의 자금수입보다 클 수 있음

-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므로 저축 장려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중에 있음
 - 다만, 주요국마다 각각의 저축이 필요한 이유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서비스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저축상품은 불필요함
 - 또한 국가의 연금시스템을 이용하여도 충분히 노후의 대비가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은 불필요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세특례 목적상 생계비 지원 분야, 교육비 분야, 자본시장 안정화 분야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첫째, 생계비지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등 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례들이 주요국에 비해 그 지원 대상과 범위 면에서 다양하고 넓은 편임
 -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특례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구조를 지님
 - 일본은 장애인, 과부의 350만엔 이내의 소액저축에 대해서 조세특례 규정이 있음
 - 영국은 ISA에서, 프랑스는 LEP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을 위한 저축을 지원해

주요 내용

- 둘째, 우리나라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저축에 대해 별도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차이를 보임
 - 미국은 QTP와 Coverdell ESA라는 제도를 통해,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비 확보 목적의 US Savings Bond 상환에 대해서도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일본은 학교교육법상 학생이 학교장의 지정에 따른 특정 예금이나 신탁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음
 - 영국은 Junior ISA, 프랑스는 Livret Jeune를 통해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 저축 조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셋째, 자본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저축상품에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해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경제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안된 것으로 판단되나, 저축과 연계하여 비과세한 해외사례는 없었음

참고문헌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10.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김재진 · 김진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 · 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1.

CCH, *United States Master Tax Guide 2012*, CCH, 2012.

CCH, *Japan Master Tax Guide 2010/11*, CCH, 2010.

한국 국세청, <http://www.nts.go.kr/>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영국 국세청, <http://hmrc.gov.uk/>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IBFD, <http://www.ibfd.org/>

세법연구 12-12

비과세·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김재진·김태훈·이형민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1-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7-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